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5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부승찬·추미애·김병주

황 희·허 영·안규백

김민석 • 윤후덕 • 정성호

전현희 • 박선원 • 박용갑

장경태 · 김준혁 · 한정애

이성유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군은 정보·수사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으며,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, 군 방첩(防諜)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정보원, 검찰청, 경찰청 등 다른 정보·수사기관의 경우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통령 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의 설치 근거로 충 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그간 군의 정보 수집·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

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, 직무,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군 방첩,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군인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,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, 권한 오·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함(안 제3조).
- 다. 국군방첩사령부에 사령관 1명,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두고,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, 부대 및 기관을 두도록 하며,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·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국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(안 제12조).
- 마.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(안 제14조).
- 바.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· 감금, 타인 간 대화의 녹음·청취, 위치정보·통신사실확인자료

수집 등을 금지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
- 사. 정치 관여죄, 직권 남용죄,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,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기계 자격정지,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(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).
- 아.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인권침해와 관련 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(안 제21조).

법률 제 호

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 방첩,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· 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(이하 "사령부"라 한다)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, 사령부는 국방부장 과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.
- 제3조(운영 원칙) ① 사령부는 운영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 -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과 그 밖의 직원(이하 "군인 등"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과 군인·군 무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,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
 - 2. 군인과 군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·남용 하는 모든 행위
 - 3.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 - 4. 군인·군무원,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신상에

관한 사항을 수집하는 행위

- 5. 이 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는 행위
- 6.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·적용하거나 헌법상 보 장된 국민(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)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

제4조(직무)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
 - 가. 「군형법」에 따른 군 관련 방첩업무
 - 나.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군을 대상으로 한 외국·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
 - 다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방위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· 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방 지
 - 라.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
- 2.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
 - 가. 다른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
 - 나. 다른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
 - 다.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·개선 지원

-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·군무원, 시설,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
-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
 - 가.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
 - 나. 대(對)국가전복.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
 - 다. 「군형법」,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및 「방위산업기술 보호 법」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
 - 라.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
 - 1) 「정부조직법」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・방위사업청・병무청
 - 2)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각군·합동참모본부·합동부대 ·기관
 - 3)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, 「한국국방연구원법」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·방위산업체·전문연구기관
 - 4)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·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
- 4. 「군사법원법」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
- 5.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
 - 가.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(情報戰) 지원
 - 나.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.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

- 라.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·지원 마. 대테러·대간첩 작전 지원
-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·지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직무 수행 시 거부)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.
- 제6조(자료의 제출 요청) 사령관(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)은 제4조의 직무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조직)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,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.
 -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,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.
 - 1.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
 - 2.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
 - 3.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. 다만,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.

- 4. 정보보호부대
- 5. 국군방첩학교
- 6.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
- 7. 국방보안연구소
-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,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 사령관은 제4조의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·분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8조(사령관 등의 임명)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(補)한다.
 -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,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 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사령관・참모장 및 감찰실장은 다른 직(職)을 겸할 수 없다.
- 제9조(사령관 등의 임무)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, 참모 업무를 조정·통제하며, 사령 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

행한다.

-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- 1. 감사 · 검열 및 직무감찰
- 2. 비위사항의 조사 · 처리
- 3.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
-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,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10조(정원)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1조(무기 휴대 및 사용)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「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」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.
- 제12조(손실보상) ① 국가는 사령부 소속 군인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- 1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(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사령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

공하여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

- 2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④ 손실보상의 기준, 보상금액, 지급절차 및 방법,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) 제7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- 제14조(정치 관여 금지) ① 군인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1.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
 - 2.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,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

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
- 3.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,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
- 4.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 에 관여하는 행위
- 5. 특정 정당·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·참석 ·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·유도·권유·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
- 6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
- 7.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나 다른 군인·군무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(告知)하는 행위
- ③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④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

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2조 및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⑤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사령관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.
- ⑥ 누구든지 제5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(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직권 남용의 금지)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·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 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)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「통신비밀보호법」,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「형사소송법」 또는 「군사법원법」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,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·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7조(정치 관여죄)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- 제18조(직권남용죄)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·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19조(불법감청·위치추적 등의 죄)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·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·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 -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20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제17조와 제19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군사법원법」 제291조제1항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.
- 제21조(인권지도 및 감독) 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「군인사법」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

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